

## 2014년 제32회 법원행시 제2차시험 기출문제

### 행정법

#### 【문 1】

다음을 논하시오.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0점)
2. 부관의 하자과 권리구제 (20점)

#### 【문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의미한다. 항만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아래 사항을 논하시오. (개정 전·후의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류, 도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 그 법적 성질에 따른 사법심사의 방식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 ◆개정 전 항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 후 항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계획이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 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민 법

### 【문 1】

甲토지에 관하여는 2001. 3. 28.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甲토지 지상의 乙건물에 관하여는 2002. 7. 15.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B의 채권자인 C는 2004. 12. 10. 乙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위 가압류에 기하여 2005. 6. 30. C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D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2. 1. 甲토지와 乙건물을 모두 매수하여 당일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6. 7. 2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乙건물은 E에게 매각되어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8. 1. 乙건물을 F에게 매각하였고, F는 당일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안에서 甲토지의 소유자인 D가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견해에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50점)

### 【문 2】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丙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다만 청구일부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10점)
2. 乙의 ①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기재하시오.(25점)
3. 丙의 ②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기재하시오.(15점)

### 〈사실관계〉

○ 甲은 2010. 1. 8. 乙에게 X대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9억 원은 2010.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X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아래의 2010. 1. 4.자 丙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를 甲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 10. 乙의 요청에 따라 乙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乙은 위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매매잔대금 9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丙은 2010.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丙은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정산금 채권 중 2억 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甲, 제3채무자는 乙, 피압류채권은 甲이 2010. 1. 8. X대지를 매도함에 따라 乙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이라고 한다) 채권 중 2억 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 19. 가압류(이하 '이 사건채권가압류' 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0. 1. 22.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다.

○ 그 후 丙은 甲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정산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 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2. 1. 29. '甲은 丙에게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2. 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丙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丙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보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억 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8. 31.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丙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기하여 X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乙은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X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甲을 대위하여 2013. 8. 31. 서

을 중앙지방법원에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1억 원을 공탁하였다.(집행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

○ 丙은 2013. 10. 3. 乙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 잡아 “피고 乙은 원고 丙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 乙은, ① 乙이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위 1억원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丙의 피고 乙에 대한 2억 원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丙은, 피고 乙은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상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② 위 매매잔대금채권 3억 원 중 원고 丙에게 전부되고 남은 1억원의 채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래의 채권자인 甲에게 남아 있는 채권에 먼저 상계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丙과 甲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소장부분 송달일은 2013. 11. 3., 변론종결일은 2014. 5. 7., 판결 선고일은 2014. 5. 21.이다)

## 민사소송법

### 【문 1】

1.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 소송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 【문 2】

B는 A에게 ‘가죽 옷 구입에 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였다. A는 B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주었다. B는 위 1억원으로 가죽 옷을 구매하여 의류 생산·납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납품하였다. C는 원래 피고가 납품한 가죽의류제품을 일본의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납품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위탁판매, 직영점 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C가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도 A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함)

1. A는 B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7천만 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A와 B 쌍방이 항소하였다. A는 항소심의 변론기일 전날에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음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A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와 B의 강요, 강박에 의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로 나누어 소취하의 효력을 설명하시오.(15점)

2. A는 B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A는 1억 원을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B에게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항소심에서 C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하는 공동소송으로 소 변경 신청을 하였다. A 신청의 당부를 설명하시오.(10점)

3. A는 B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대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2항 설문과 같은 이유로 A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B가 자신이 가죽 제품을 구입하여 C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C가 직접 가죽의류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B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차용의 주체는 B이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25점)

## 형 법

### 【문 1】

甲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김실장' 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甲은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김실장은 중국에서 사업자금과 사업거점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할 사람을 물색하던 甲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乙, 丙에게 시키는 대로만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각자에게 따로따로 분담된 역할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乙은 '부자캐피탈 임 팀장' 을 사칭하고 무작위로 선택된 A, B, C, D등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A, B, C, D로부터 미리 정해진 대포통장의 계좌로 각 100만원씩을 입금 받았다.

丙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나누거나 甲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서울에서 돈을 찾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창원 시내 곳곳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A, B, C, D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였다.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丙은 동네 친구인 丁에게 창원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丁은 丙이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인출하러 간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멀리 간다는데 도와주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丙의 요구대로 창원 시내 곳곳까지 운전해 주었다.

한편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乙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더 마련하기 위하여, E, F가 운영하는 각 어린이집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통합포털사이트 초기 화면에 “인터넷뱅킹 보안강화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입력하라” 는 유사팝업창이 뜨게 하는 방법으로 E, F가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E, F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그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E, F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이 소지한 대포통장의 계좌로 각 1,000만원씩 이체되도록 하였다.

위 사례를 읽고 甲, 乙, 丙, 丁의 각 죄책(죄명,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포함)을 논하시오.(특별범위 받은 제외)(50점)

## 【문 2】

오렌지 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모임(재건축추진위원회)이 결성되었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A와 부위원장 B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은 재건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게시판에 ‘재건축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간부들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이권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국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될 뿐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끝까지 결사반대하여 그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평소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甲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乙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이웃 C에게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뇌물

을 받았다. 이걸 우리 아파트 주민이 모두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위 사례를 읽고 아래의 각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범죄 성립 여부 및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죄명, 적용법조,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포함)

1. 위 사례에서 누구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甲과 乙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25점)

2. 위 사례에서 A와 B가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 경우.(25점)

## 형사소송법

### 【문 1】

A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A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에게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A는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으나 경찰관들은 A를 강제로 경찰서까지 연행하였다. 경찰서에서 A는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한 후 소변을 제출하였고,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다. 경찰은 A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긴급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함),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한 구속영장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A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다. 이를 송부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A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공판과정에서 A는 증거로 제출된 위 ‘소변검사시인서’와 ‘감정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한편 검사는 A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A는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B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후 B는 A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1. 경찰관들이 A를 경찰서로 연행한 조치는 적법한가점)
2. A가 서명한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가점)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출한 ‘감정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가점)
4.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점)

**【문 2】**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배심원의 지위를 논하시오.(50점)

**상 법**

**【문 1】**

A주식회사는 2009. 9. 2. B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개인인 甲은 2009. 1. 1.부터 2010. 5. 31.까지 A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억 원이다.

甲은 2010. 1. 25.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점유하였다. B은행은 A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甲은 경매절차에서 A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 다음 각 문항은 독립적이며 서로 관련이 없다.

1. 甲이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甲이 상인이어야 한다.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을 설명하시오.(10점)
2. 甲이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甲이 A주식회사에 공급한 물품을 ①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경우, ② 부품을 매수하여 완성품을 조립한 경우, ③ 스스로 원시(原始) 생산한 물건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 경우에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설명하시오.(15점)
4. 甲에게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甲은 B은행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문 2】

甲주식회사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乙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A는 乙주식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2012.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이후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등기상 이사로서 경영지원부문 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甲주식회사는 2013. 11. 20. 丙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같은 날 위 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하여 甲주식회사와 A 및 乙주식회사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乙주식회사 측에서는 A가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명의로 위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乙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연대보증계약 체결 허가를 결의한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甲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

제4조 (Put Option)

1. 甲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A 또는 乙주식회사에 대한 서면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 중 甲주식회사가 요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잔여 주식을 A 또는 乙주식회사가 양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 5,000원에 주금납입 완료일로부터 양수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금리 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 가격으로 한다.

마. A 또는 乙주식회사가 본 계약서 각 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 (담보)

이 사건 주식의 발행 이후 매월 마지막 코스닥 장중거래 가능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기준주가가 발행가를 10% 이상 하회할 경우 乙주식회사 또는 A는 10% 이상 하회한 부분만큼의 실물(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자산) 담보를 5 영업일 이내에 제공한다.

甲주식회사는 2014. 1. 31. A 및 乙주식회사에게, 2014. 1. 3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기준주가가 발행가를 10% 이상 하회하자 연대보증계약 제8조에 따른 추가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甲주식회사는 A 및 乙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2. 15. 乙주식회사에게 연대보증계약 제4조에 따른 양수대금과 추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甲주식회사의 통지에 대하여 乙주식회사는 위 연대보증계약은 A가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인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사록은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A가 자신 또는 丙주식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甲주식회사는 A에 의한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명과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乙주식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정당한가다만, 乙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임을 전제로 답변할 것)(50점)

## 부동산등기법

### 【문 1】

대위등기신청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40점)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은 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갑)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을은 ○○지방법원 ○○등기소 00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나.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00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갑이 위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신청방법을 약술하시오.(10점)

### 【문 2】

수용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